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일	2022.10. 1
개정일	2023. 2.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인권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센터는 동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행위”란 위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2차 피해”라 함은 고충민원사건의 내용 또는 사건 관련인의 신원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 또는 사건의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 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 5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문제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한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조직 및 직무) ① 센터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사건(이하 “성희롱 등 고충민원사건” 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둔다.

③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1)

1.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및 보고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3. 인권침해 행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표명
4. 기타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센터장을 포함한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운영·평가, 인권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징계

제11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피해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3. 2. 1)

제12조(조사의 종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13조(시정조치)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제14조(징계 등 권고)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 관계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중용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경우

제16조(결정의 통지 등)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제16조에 따라 통지받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③ 사건 관계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협력의무) 학내 부서 및 학부(과)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피 해 사 실	최초발생일		장소	
	최근발생일		장소	
	피해유형 (중복가능)	언어적 괴롭힘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접촉 <input type="checkbox"/> 학업·업무상의 차별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발생횟수	일회성 <input type="checkbox"/> 반복성 <input type="checkbox"/> (회)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행동 (중복가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input type="checkbox"/>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input type="checkbox"/> 제 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자의 행동의 변화/반응	중지 <input type="checkbox"/> 감소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증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피해 내용 (6하 원칙)				

방문 경위	자진 <input type="checkbox"/> 교수권유 <input type="checkbox"/> 직원권유 <input type="checkbox"/> 친구권유 <input type="checkbox"/> 학내광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실명 공개 여부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사건 해결 방향	비공식 절차(중재) <input type="checkbox"/> 공식 절차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요구사항 (중복가능)	사과 및 중재 <input type="checkbox"/> 공개사과 <input type="checkbox"/> 규정에 따른 처벌 <input type="checkbox"/> 공간분리 <input type="checkbox"/>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 (서명)

동서울대학교 인권센터